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특별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핵심적인 인사 교류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하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급 조기승진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34조, 제 35조의2)

- 1)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기관별 임용심사 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
- 3)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역량평가 통과를 명시하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핵심 인사교류자 인사우대 강화(안 제48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핵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류경력의 일정 부분만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필수보직기간 별도 설정 근거 신설(안 제45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 협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율·책임·협업·직무중심 등 인사원칙 기준 마련(안 제5조의2조)

소속 장관이 인사운영의 원칙을 정할 때 자율성·책임성, 협업 및 직무중심성 강화 원칙이 반영되도록 함.

마.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의4, 제16조, 제31조, 제32조)

전문직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전문직공무원 신설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11. ~ 6. 1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원칙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2. 소속 공무원 간 협업 강화
3.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직무중심성 강화

제10조의3제1항 본문 중 “승진임용·보직관리”를 “채용·승진임용·보직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역량평가”를 각각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위해 소속 장관이 추천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역량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를

“제7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호제6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직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이상인”을 “이상(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인”으로 한다.

제31조제1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부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32조제3항 중 “다시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34조제9항 중 “제11조”를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제11조”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속 장관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제35조의2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제45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직위의 인사교류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직위의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생략) <u><신설></u>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소속 장관은 인사원칙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u>소속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u> 2. <u>소속 공무원 간 협업 강화</u> 3. <u>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직무중심성 강화</u>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u>승진임용·보직관리</u>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 ----- ----- ----- ----- ----- ----- <u>채용·승진임용·보직관리 및 교육훈련</u> ----- ----- ----- ----- -----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⑦·⑧ (생략)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

-----.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위해 소속 장관이 추천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제1호의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역량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⑩ ----- 제9항-----

-----.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① --

----- 제7호까지
의 사항을 의결하고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호제6항에 따른 전문직공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 13. (생략)

② ~ ⑦ (생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⑫ (생략)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⑭ · ⑮ (생략)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②

----- 이상(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인 ---.

4. ~ 1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2. (현행과 같음)

3.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부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⑭ · ⑮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생 략)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⑧ (생 략)

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⑩ (생 략)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현행과 같음)

③ -----

--- 징계처분-----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제11조---.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 나. (생략)

<신 설>

3. ~ 5. (생략)
- ②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_____ .

1. (현행과 같음)
2.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소속 장관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 [illegible]

1. · 2. (생략)

<신설>

⑥ ~ ⑪ (생략)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⑬ (생략)

<신설>

제48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① ~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⑦ ----- 제6항-----

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 한다.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5